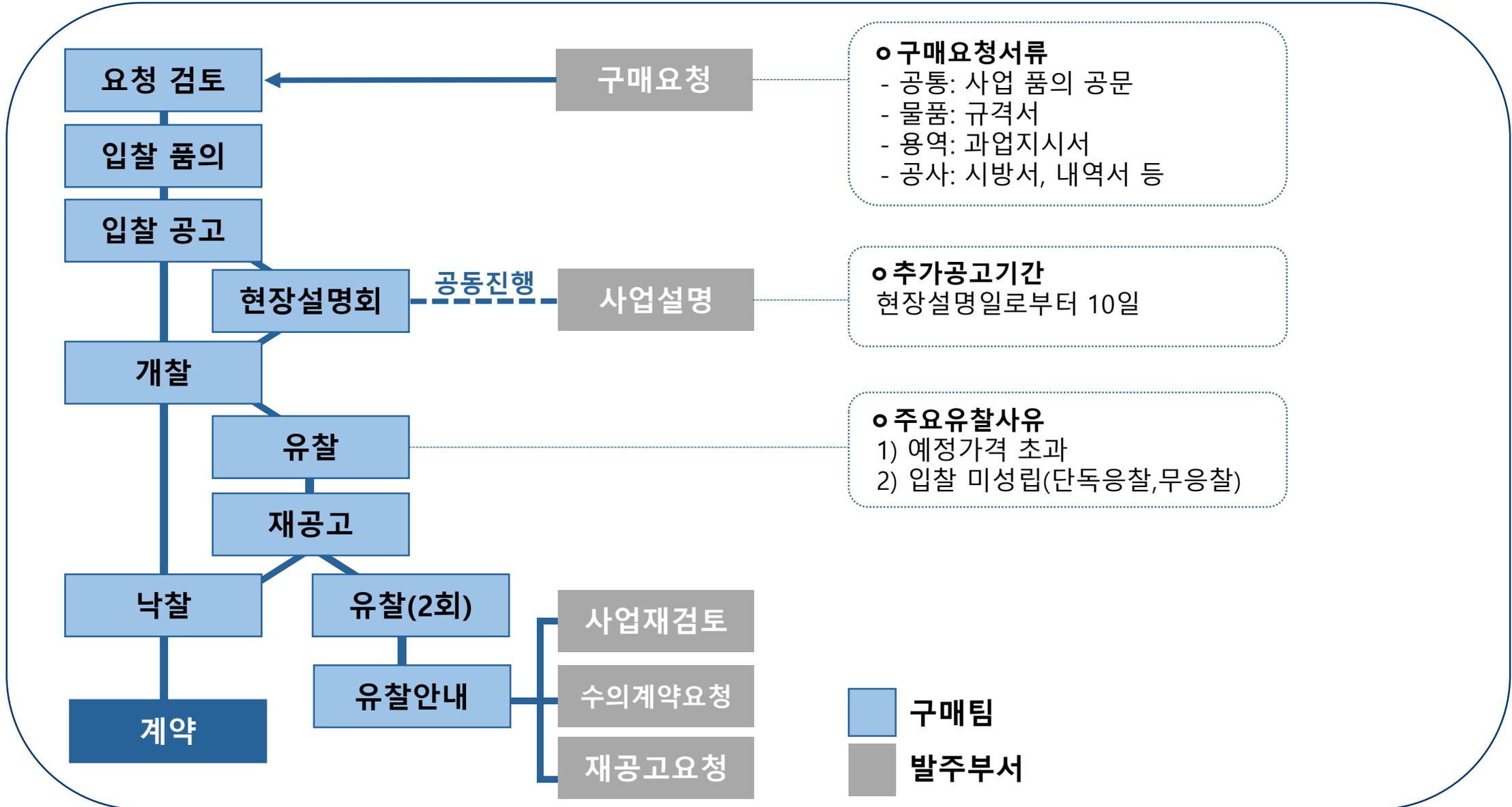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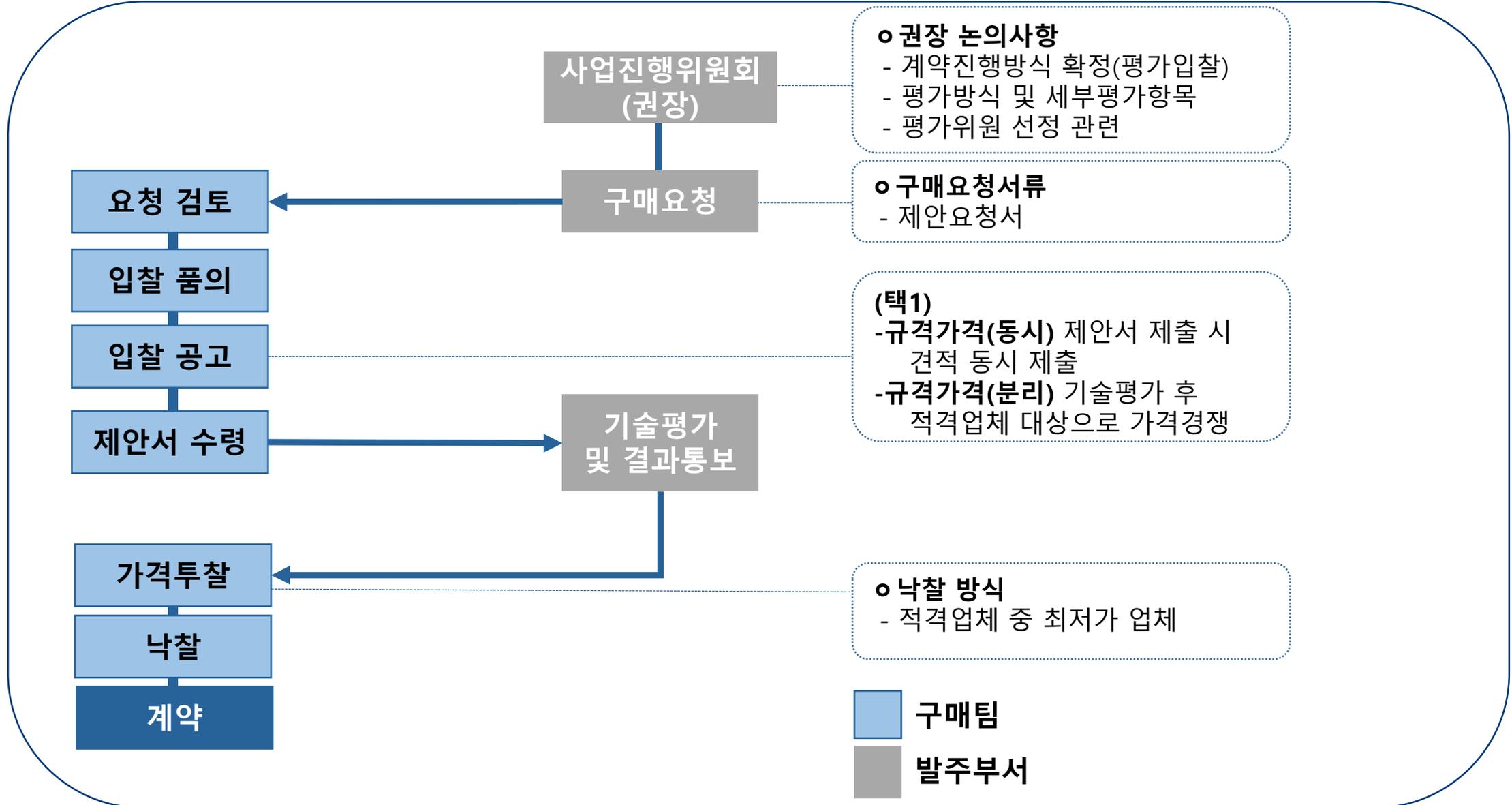
낙찰 방식에 따른 순서도

최저가 낙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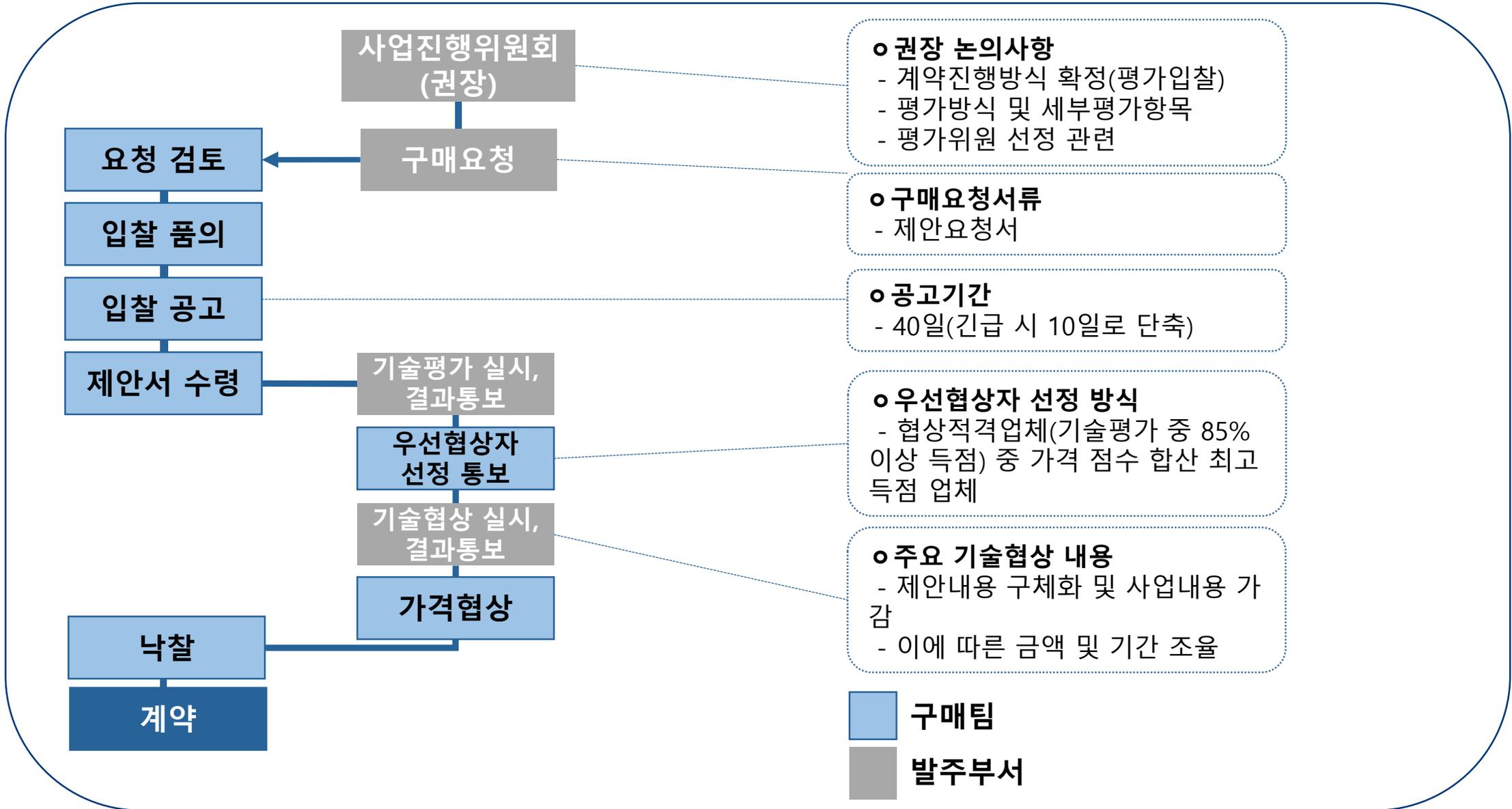
낙찰 방식에 따른 순서도

평가입찰(2단계 입찰, 규격가격 입찰)



낙찰 방식에 따른 순서도

평가입찰(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입찰과 협상에의한계약 비교

명칭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입찰(규격가격평가)
법적근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평가방식	제안서 / 규격서 평가	제안서 / 규격서 평가
낙찰방식	<p>1) 기술평가 기술평가 결과 배점의 85%이상 득점한 협상적격 업체중 가격평가와 합산하여 최고득점 업체(우선 협상업체)선정</p> <p>2) 협상절차 - 기술협상/가격협상 실시하여 협상 완료된 업체 (협상결렬시 득점순위대로 협상)와 계약체결</p>	<p>- 기술평가 기술평가 결과 배점의 85%이상 득점한 적격업체 중</p> <p>-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와 계약</p>
적용대상	규격/요구사항이 다소 모호하여 협상대상자와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요청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격/요구사항 비교적 구체적이며 예산절감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평가 : 60점 / 가격평가 : 40점 사안에 따라서 비율을 ±10점까지 조정 가능	기술평가 : 100점 만점